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20.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2.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은희의원)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6조1)에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요건을 갖추고(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함), ② 사무소가 있어야 함.

현행법 제27조2)에 따라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1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③ 현행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④ 등록 취소 후 3년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사무소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⑤ 임원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제5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또한, 현행법 제33조³⁾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③ 현행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현행법 제27조 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6,140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체 매출액은 2014년 1조 5,041억원에서 2024년에 9조 5,07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중문화예술인은 2014년 7,327명에서 2024년 12,092명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 직원은 2014년 8,014명에서 2024년 21,033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연도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매출 및 종사자 현황

(단위: 억원, 명)

연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구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체 매출액		15,041	25,841	34,575	44,756	68,137	95,076
종 사 자	대중문화예술인	7,327	8,059	9,141	10,586	11,355	12,092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소속 직원	8,014	12,935	14,289	17,602	19,008	21,033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을 상실한 부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차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를 상시 유도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운영하는 부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적발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4)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 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채납처분을 포함한다)
8.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법 제41조제1항제7호·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화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안 제26조제4항에 따른 점검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매년 실시되는 의무교육과 격년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⁵⁾를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부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개정 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등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원안가결

6. 찬반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수정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 ⑥ (생략)</u>	<u>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u>

3. (생략) ② ~ ④ (생략)	<u>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